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53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8년 11월 28일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청소년시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목적과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청소년시설 통합운영의 주체와 통합운영 대상을 명확히 함(안 제5조의2).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의2 중 “〈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〉과 〈청소년희망도시 서울〉 기본 계획에 따라 청소년활동, 복지, 안전과 보호, 상담 등의 시설을”을 “시장은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을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u><신설></u>	제5조의2(통합운영) <u><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>과 <청소년희망도시 서울>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활동, 복지, 안전과 보호, 상담 등의 시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.</u>	제5조의2(통합운영) <u>시장은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통합운영) 시장은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	<p><u>〈신 설〉 제5조의2(통합운영) 시장은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